

관세청 일반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관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관 세 청 장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16명)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해양수산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직류)	5명	정년 적용	전국세관
해양수산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직류)	11명	정년 적용	전국세관

※ 임용예정직위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중복지원 불가)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해양수산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직류)	○ 감시정 운용 및 육·해상 감시업무
해양수산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직류)	○ 감시정 운용 및 육·해상 감시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선박직원법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6.10.21.)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6.10.21.)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해양수산	자격증	[선박항해] 항해사(1~6급) 자격증 소지자 [선박기관] 기관사(1~4급) 자격증 소지자
		* 위 열거된 자격증에 한하며 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6.10.21.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다. 가산점 적용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선박항해직류 및 선박기관직류 모두 적용)
- 의사상자 등(선박기관직류만 적용, 선박항해직류 해당 없음)

[가산점 고려사항]

○ 기본사항

- 가산점은 1차시험(필기시험) 시행 전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⑦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 의사상자 가점은 10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아래 의사상자는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1. 만점의 5% 가산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만점의 3% 가산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5 시험 방법

가.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별 문항·점수 : 75문항, 300점 만점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점 수	비 고
1차 시험 (공통)		물리	25	4	100	객관식 선택형 (4지)
		관세법개론	25	4	100	
2차 시험 (전공)	항해직류	항해	25	4	100	
	기관직류	선박기관	25	4	100	

- 출제범위 및 난이도
 - 물리 :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준함(물리학 I)
 - 관세법개론 : 현행 관세법 전문(제2장 제4절, 제3~5장 제외)

< 관 세 법 제 외 범 위 >

제2장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전공과목 :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시험에 준함
- 합격자 결정
 -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 내 포함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필기시험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후 발생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당초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합격자 결정

나. 3차시험 : 서류전형

- 1·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 응시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전형)

다. 4차시험 : 면접시험

- 3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 항목마다, 각각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면접시험 평정결과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
 - 미흡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보통 : 그 외의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 '우수' 등급 합격, '미흡' 등급 불합격

-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차 병합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1·2차 병합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상기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적용할 때 총득점이 높은 차례로 선발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07.27.(월) ~09.04.(금)	'26.08.31.(월) ~09.04.(금)	'26.09.19.(토)	'26.09.29.(화)	'26.10.15.(목)	'26.10.21.(수)	'26.10.30.(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시험 장소 및 안내사항 등은 '26.9.11.(금) 관세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8. 31.(월) ~ 9. 4.(금)
 -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다만, 마감일은 18:00까지)
 - ※ 접수마감일(9.4.금) 18:00 이후, 응시수수료 납부 불가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customs.go.kr>) > 시험정보 > 응시원서 접수 > “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선택
- ※ 응시표는 '26.9.11.(금) 09시부터 응시원서 접수 화면에서 출력 가능(응시원서 포함)
(접수 문의 : ☎ 041-410-851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나. 제출서류

서류	비고
1.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사진 1매(jpg파일) * 해상도 100 이상, 규격 3.5cm×4.5cm *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 형식(한글 형식 저장 시 오류 발생) ○ 응시수수료 5천원 * 응시원서 제출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해당 증명서 제출)
2. 응시자격 증빙서류 각 1부(pdf파일)	○ 관련 자격증 사본
3. 주민등록초본 1부(pdf파일) - 남성에 한함	○ 병역사항 기재 필수
4. 가산특전 증빙서류 1부(pdf파일)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

※ 제출서류 업로드시 파일명은 성명_서류명.pdf로 기재

(예시) 홍길동_자격증.pdf, 홍길동_초본.pdf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추가 제출 서류 안내 예정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 당시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명서 제출 후 반환조치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자 요청시 본인의 면접결과를 종합한 상·중·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호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호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호봉외 급여 지급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 : (채용전반) 관세청 운영지원과(042-481-7675)
(필기시험)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041-410-85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서기보	5명	전국세관
해양수산(기관)		11명	

주요 업무	○ 감시정 운용 및 육·해상 감시 업무 -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관리·운용 -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 선용품 적재·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등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관세법 제반 지식 ○ 선박운용 관련 지식 ○ 선박(항해, 기관)에 대한 전문지식 ○ 수출입물품에 관한 지식 ○ 밀수동향 분석 등
-------	---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항해직류 : 항해사(1~6급) 자격증 소지자 ○ 기관직류 : 기관사(1~4급) 자격증 소지자 * 위 열거된 자격증에 한하며 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선박항해직류 및 선박기관직류 모두 적용) ○ 의사상자 등(선박기관직류만 적용, 선박항해직류 해당 없음)
------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26.10.21.)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